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년 1월 11일(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6년 1월 12일

다. 상정일자 : 2006년 2월 23일(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1항)
-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전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함(안 제3조제2항)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함(안제3조제3항)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함(안제5조)
-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별로 개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수당 등 실비변상 조항을 개정함(부칙안 제2조 및 제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준)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검토한바,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을 개별 조례나 교육규칙 또는 훈령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통일된 지급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함,
- 다만, 안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의 통합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3조3항의 규정에서 시험위원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험실시 시기에 맞춰 개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과는 불부합 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수정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6년 2월 23일

제안자 : 장준호 의원외 4

□ 제안이유

- 본 제정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각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지급의 통합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3조3항의 규정에서 시험위원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시험실시 시기에 맞춰 개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적용대상과는 불부합 하기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함

□ 주요내용

-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수당) ① ~ ② (생략)</p> <p>③ <u>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u></p>	<p>제3조(수당) ① ~ 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삭제)</p>